

『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』 행정명령 연장 공고

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홍천군 행정명령(2021.4.4. 홍천군 공고 제2021-704호)을 아래와 같이 변경 연장하여 시행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11일

홍 천 군 수



1. 행정명령기간 : 2021. 4. 12.(월) 00:00 ~ 2021. 5. 2.(일) 24:00.(3주간)

2. 법적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

3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4. 12.(월) 00:00부터

4.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처벌규정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 2호의2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**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. 처분사유 : 코로나19의 4차 전파 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지역에서의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3주간 연장필요

6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, 제83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·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,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※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 간 집합금지(행정명령) 조치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요약

구분		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
① 모임·행사		
	사적 모임	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, ⑦ 돌잔치 전문점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	기타 모임·행사	▶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(단, 500명 초과시 관할

구분		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
		지자체에 신고·협의 필요) ▶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	
공통수칙	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 등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유흥시설 5종, 홀덤펍		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	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)
실내 스탠딩공연장		▶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식당·카페(무인카페 포함)		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사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파티룸		▶ 이용인원 제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실내체육시설 (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	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	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결혼식장	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구분	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
장례식장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	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장	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'ㄷ'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독서실·스터디카페	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▶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
아·미용업	▶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백화점·대형마트	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	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
숙박시설	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전시회장·박람회장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국제회의장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국공립시설	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▶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 이용	▶ 마스크 착용

구분		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
스포츠 관람		▶ 3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		▶ 밀집도 2/3 준수
종교활동	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·숙박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		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

9.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①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*('콜라텍' 방역수칙 적용)

* 무도장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를 할 수 있는 시설

< 중점관리시설 6종 >

- ▲ 유흥시설 5종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
-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▲ 노래연습장 ▲ 실내 스탠딩공연장
- ▲ 식당·카페 ▲ 파티룸

② 적용 기간

- 2021년 4월 12일(월) 0시 ~ 5월 2일(일) 24시

③ 방역 수칙

- 중점관리시설 6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각 시설별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유흥시설 5종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 (이용자)
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	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8㎡당 1명)
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	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
-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 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	-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 플로어 이용 금지),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
※ 콜라텍(무도장)은 방역수칙 준수하며, 춤추기(무도) 가능	
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
★ 추가 적용 수칙	
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
▲ 노래연습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
▲ 실내스탠딩 공연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
▲ 파티룸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개별 방 면적 8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개별 방 면적 8㎡당 1명)
▲ 식당·카페	
★ 추가 적용 수칙	
없음	

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 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
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1 적용 대상

○ (대상)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*

- *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·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,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<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>

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돌잔치전문점 ▲목욕장업 ▲영화관 ▲공연장
▲PC방 ▲오락실·멀티방
▲실내체육시설 ▲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실외체육시설
▲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)
▲독서실·스터디카페
▲유원시설(놀이공원, 워터파크) ▲이·미용업 ▲백화점·대형마트
▲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
2 적용 기간

○ 2021년 4월 12일(월) 0시 ~ 5월 2일(일) 24시

3 방역 수칙

-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은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각 시설별로 아래 '수칙 추가 적용 수칙' 적용

<추가 적용 수칙>

▲결혼식장 ▲장례식장 ▲돌잔치전문점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
- 이용인원 제한	- 이용인원 제한 준수
* 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	* 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
▲영화관, ▲공연장	
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	○(이용자) 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▲ PC방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○(이용자) -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
▲ 오락실·멀티방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
▲ 실내체육시설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
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수용가능 관객의 30% 이내 입장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수용가능 관객의 30% 이내 입장
▲ 실외체육시설	
★ 추가 적용 수칙	
없음	
▲ 학원 등(학원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(일반), 학원·교습소(관악기·노래·연기), 학원·교습소(댄스·무용), 학원·직업훈련기관(기숙형))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
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	
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	○(이용자) -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-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준수
▲ 유원시설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	○(이용자) -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준수
▲ 이·미용업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	○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·허가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▲ 대형마트·백화점, ▲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	
★ 추가 적용 수칙	
없음	

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

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방역지침 준수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
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
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
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① 적용 대상

○ (대상)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
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(호텔, 모텔, 여관 등)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
-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(관광호텔, 호스텔 등)

② 적용 기간

○ 2021년 4월 12일(월) 0시 ~ 5월 2일(일) 24시

③ 방역 수칙

○ 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숙박시설 전체

★ 추가 적용 수칙
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
- 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
- *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
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
- *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
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금지

○(이용자)

- 숙박시설 주관 행사·파티 참여금지
-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
-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금지

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숙박시설 등에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
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기능함을 안내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① 적용 대상

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*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 - *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
- (인원산정) '5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, 등은 제외
- '사적모임'은 영유아*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
 - *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※ 적용 예외

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
■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■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

※ 직계가족 모임,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

■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■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②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

②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*, 학술행사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**

*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

**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는 각각 기타시설로서 별첨 '기본방역수칙' 의 전시장·박람회장, 국제회의 시설 수칙 적용하되,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시회(장) 등에 관해 별첨 '기본방역수칙'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,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

② 적용 기간

○ 2021년 4월 12일(월) 0시 ~ 2021년 5월 2일(일) 24시

③ 법적 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4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
① (중대본)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(감염병예방법 제83조)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* 행정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*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(예 : 자전거 동호회 모임)에 한함



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 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1 적용 대상

- (대상) 종교시설

2 적용 기간

- 2021년 4월 12일(월) 0시 ~ 5월 2일(일) 24시

3 방역 수칙

-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 '추가 적용 수칙' 적용

<추가 적용 수칙>
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	○(이용자) - 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	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참석 및 음식 섭취 금지

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
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① 적용 대상

- (대상)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등 기타시설 8종
< 기타시설 8종 >

▲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 경륜·경마·경정 ▲ 미술관·박물관 ▲ 도서관
▲ 키즈카페 ▲ 전시회장·박람회장 ▲ 마사지업·안마소, ▲ 국제회의 시설

② 적용 기간

- 2021년 4월 12일(월) 0시 ~ 5월 2일(일) 24시

③ 방역 수칙

- 기타시설 8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각 시설별로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카지노, ▲ 경륜·경마·경마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	○ (이용자) - 수용가능인원의 20% 제한 준수
▲ 전시회장·박람회장 ▲ 국제회의장	
★ 추가 적용 수칙	
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	○ (이용자) -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
▲ 미술관·박물관, ▲ 도서관, ▲ 키즈카페,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	
★ 추가 적용 수칙	
없음	

④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기타시설 8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
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**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
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① 적용 대상

- (대상) 콜센터, 물류센터

② 적용 기간

- 2021년 4월 12일(월) 0시 ~ 5월 2일(일) 24시

③ 방역 수칙

- 콜센터,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

<추가 적용 수칙>

▲ 콜센터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 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	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▲ 물류센터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	○(이용자)

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--	--

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
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 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① 적용 대상

○ (대상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② 적용 기간

○ 2021년 4월 12일(월) 0시 ~ 5월 2일(일) 24시

③ 법적 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3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4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운송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
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○ 운송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

이용자 수칙

-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👉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

-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체장이 과태료 부과